

■ 목 차

■ 지평 소식 ■

- 지평, 금융규제팀 구성..... 1
-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 구성..... 2
- 최승호 미국변호사 영입..... 3
- 박근배 변호사 영입..... 4
- 이강호, 하지인 변호사 영입..... 5
- 윤국정, 정선열 변호사 영입..... 6
- 구정모, 구자형, 반정현, 이해온 변호사 영입..... 7
- 강지성 호주변호사 영입 및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 9
- 부산 사무소 서상원 변호사 영입..... 10
- [공익] 지평, '한·중·일 역사분쟁' 관련 공익강연 개최 外..... 11

■ 주요 업무 사례 ■

- 지평, 일본 바이오업체 교토바이오파마를 대리하여 반도체 장비 및 부품제조업체인 에이스하이텍에 매각 관련 자문..... 13
- 지평, 천안 비지니스파크 조성 공모형 PF사업 분쟁 승소..... 14
- 지평,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S&T모터스 인수 관련 자문..... 15
- 지평, 우리자산운용 및 스프랏을 대리하여 한국전력과 국민연금 간의 8,000억 원 규모 코퍼펀드 조성 관련 자문..... 16
- 지평, 대우 PEF를 대리하여 에코시스템 지분 매각 구조 설계 및 지분양수도 거래 관련 자문..... 17
- 지평, 퍼시픽투자운용을 대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한 롯데시티호텔 선도매입거래 관련 자문.. 18
- 지평, 정보기술 및 패션유통 업체인 리노스를 대리하여 임상시험전문수탁기관 드림씨아이에스 지분 인수 관련 자문..... 19
- 지평,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GS건설 용인기술연구소의 Sale and Lease Back 거래 관련 자문..... 20
- 지평, 영화 '메이크 유어 무브' 제작 과정에서 할리우드 투자계약, 배급계약, 에이전시계약 검토 및 SM엔터테인먼트와 CJ E&M 측에 자문 제공..... 21

■ 법률 논단 ■

- [금융규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개정 22
- [사모펀드] PEF의 새로운 이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26

■ 최신 판례 ■

- [지적재산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8
- [노동]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33
- [도산] 파산관재인인의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39

■ 최신 법령 ■

- [공정거래]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구체적 유형 제시 41
- [상법] 상법 일부개정안 43
- [자본시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 44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46
- [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48
- [행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 50

■ 단신 ■

- 김지형 고문변호사, 연구논문 「노동법리의 법적 논증」 ‘법학평론’ 제4호 게재 51
- 최승수 변호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강의 외 52
- 김성수 변호사, ‘암관리세미나’에 참석하여 ‘담배소송의 현황과 전망-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특강 외 53
- 정철, 류혜정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삼성물산 해외계약관리 실무과정’ 강의 54
- 정철, 고세훈 변호사, ‘미얀마 최근 법률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설명회’ 발표 55
- 류혜정 변호사, 한국기술진흥원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56
- 주성훈 변호사, 매일경제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M&A 전략 전문가 과정’ 강의 외 57
- 고세훈 변호사, ‘미얀마 노동법/세법 세미나’ 발표 58
-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의 59
- 임승혁 공인회계사, ‘M&A 세법 실무(제2판)’ 발간 60
- 구상수 공인회계사, 중부지방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 선임 61

■ 지평 소식 ■

지평, 금융규제팀 구성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그에 따른 집단적 분쟁, 신용카드회사의 개인 정보 유출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 현실에서 금융 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금융규제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지평의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기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및 금융분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던 윤영규 변호사를 팀장으로 금융규제 자문에 대해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지평은 최근 외국계 시중은행에서 장기간 Compliance 업무를 담당했던 심희정 변호사, 금융감독기구에서 20년간 근무하고 금융기관 검사업무에 탁월한 경험을 가진 이성기 전문위원을 영입하여 금융규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평은 금융규제팀 구성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기관의 설립 및 인수·합병, 영업행위와 내부 운영에 관한 자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검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기업공시에 관하여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Law&Biz] 지평 '금융규제팀' 신설...집단소송 등 종합자문(2014. 5. 7.)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금융규제팀' 신설(2014. 4. 29.)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금융규제 종합자문 '금융규제팀' 구성(2014. 4. 29.)

■ 지평 소식 ■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 구성

법무법인 지평은 다가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선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선거법사건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이 매우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으며, 일정 부분은 헌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 법원의 각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충분한 선거재판경험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비록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선거법 자문을 통한 선거법 준수와 선거소송에서의 효과적인 변론은 선거운동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지평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윤현주 변호사와 선거소송 등 각종 소송경험이 풍부한 박영주 변호사 등 선거법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하여 선거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소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Law&Biz] 지평, 선거법전문팀 출범(2014. 5. 14.)
- 법률신문 - 지평, 선거법전문팀 구성(2014. 5. 16.)
- 서울경제 - 지평, 선거법 전문팀 구성 外(2014. 5. 19.)
- 뉴스토마토 - 법무법인 지평, 헌법재판관·대법관 출신 포진 '선거법전문팀' 가동(2014. 5. 14.)
- 로이슈 -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 구성(2014. 5. 13.)

■ 지평 소식 ■

최승호 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최승호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3월 최승호 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최승호 미국변호사는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지평 금융파트에서 구조화금융, 선박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미국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District of Columbia 변호사로, 국내 및 해외 로펌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 지평 소식 ■

박근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박근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4월 박근배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박근배 변호사는 육군 본부 법제과 계약 담당, 육군 제1군사령부 군판사, 육군 제1사단 법무참모, 수도방위사령부 검찰부장, 육군 군사법원 군판사, 대통령실 경호처 기획실, 대통령경호실 법무보좌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서 소송·중재, 방위산업, 기업일반·국제거래, 건설·부동산, 형사, 가사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이강호, 하지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이강호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3월 이강호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강호 변호사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서 소송·중재, 건설·부동산,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하지인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3월 하지인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하지인 변호사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서 소송·중재, 금융·증권, 건설·부동산, 조세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윤국정, 정선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윤국정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4월 윤국정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윤국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0기를 수료한 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서 공익법 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지평 회사파트에서 M&A, 기업일반·국제거래, 자원·에너지·환경, 중국, 태국, 미얀마, 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 브라질·중남미, 인도·중동·아프리카, 북미·유럽, 북한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정선열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3월 정선열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정선열 변호사는 삼성SDS에서 IT컨설턴트로 근무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제43기를 수료한 후 현재 지평 회사파트에서 M&A,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정보통신·인터넷, 중국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구정모, 구자형, 반정현, 이혜온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구정모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3월 구정모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구정모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기 졸업생으로 현재 지평 소송 파트에서 소송·중재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구자형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3월 구자형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있습니다.

구자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기 졸업생으로 현재 지평 회사파트에서 M&A, 기업일반·국제거래, 공정거래, 노사관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지평 반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2월 반정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반정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기 졸업생으로 현재 지평 금융파트에서 금융·증권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이혜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3월 이혜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혜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기 졸업생으로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서 소송·중재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강지성 호주변호사 영입 및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



(법무법인 지평 강지성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4월 강지성 호주변호사를 영입하였으며, 강지성 호주변호사는 5월부터 미얀마 현지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지성 호주변호사는 호주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the Bachelor of Laws & the Bachelor of Commerce (Accounting & Finance)를 졸업하고, New South Wales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호주 시드니 H.I.S. Lawyers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지 지평 미얀마팀에 소속되어 기업일반 및 국제거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부산 사무소 서상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서상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산 사무소는 2014년 2월 서상원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서상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3기를 수료한 후 현재 부산 사무소에서 소송·중재, 해상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공익] 지평, '한·중·일 역사분쟁' 관련 공익강연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4월 1일 김종인 교수(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를 모시고 '한·중·일 역사분쟁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2014년 제1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익강연에서는 가속화되는 일본의 우경화,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급부상, 북한의 권력 3대 세습, 북핵 문제 등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한·중·일 3국 사이에는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대표적으로 동북공정이 문제가 되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교과서, 독도영유권, 위안부, 신사참배 등이, 중국과 일본 사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한·중·일 3국 사이에는 방공식별구역 이슈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익강연을 통해 한·중·일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견제와 균형의 틀 속에서 정치적·외교적 안정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2014년 제1회 공익강연 한·중·일 역사분쟁에 관하여(2014. 4. 1.)

[공익] '소외계층을 위한 제빵 만들기' 활동

법무법인 지평은 매 짝수달 셋째 주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제빵 만들기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도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지평 소속 변호사 및 직원 10여 명은 약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에 직접 참여하여 식빵과 야채빵 등을 만들고 복지관 및 경찰지구대를 통해 해당 빵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일본 바이오업체 교토바이오파마를 대리하여 반도체 장비 및 부품제조업체인 에이스하이텍에 매각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일본 바이오업체인 교토바이오파마 주주들을 대리하여 반도체 장비 및 부품제조업체인 에이스하이텍에 교토바이오파마 주식 100% 매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주성훈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천안 비지니스파크 조성 공모형 PF사업 분쟁 승소

법무법인 지평은 고려개발(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을 대리하여 천안시가 대우건설과 한국산업은행 등 19개 건설 출자사와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상대로 낸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주식인도청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민관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실패 책임을 민간 컨소시엄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로, 용산권역세권개발사업 등 유사 민관공모형 사업의 소송에 선례가 될 수 있을 사건입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천안시, 국제비즈니스파크 무산 관련 소송서 패소(2014. 3. 3.)

[담당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정원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이해원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S&T모터스 인수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라오스 최대 한상기업인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S&T모터스(구 효성오토바이) 인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더벨 - 코라오그룹, S&T모터스 구세주될까\(2014. 3. 6.\)](#)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주성훈 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우리자산운용 및 스프랏을 대리하여 한국전력과 국민연금 간의 8,000억 원 규모 코퍼펀드 조성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우리자산운용 및 캐나다 자산운용사 스프랏을 대리하여 한국전력과 국민연금 간의 8,000억 원 규모의 Corporate Partnership PEF 조성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 한전, 2000억 원 규모 사모펀드 2개 설립(2014. 3. 6.)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이민경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대우 PEF를 대리하여 에코시스템 지분 매각 구조 설계 및 지분 양수도 거래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대우 PEF를 대리하여 에코시스템 지분 매각 구조 설계 및 지분양수도 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이투데이 - 태영건설, 폐기물 처리사업 확장 나섰다(2014. 3. 19.)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주성훈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진연수 수석전문위원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퍼시픽투자운용을 대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한 롯데 시티호텔 선도매입거래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퍼시픽투자운용을 대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한 울산 소재 롯데시티호텔의 선도매입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설일영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정보기술 및 패션유통 업체인 리노스를 대리하여 임상시험전문수탁기관 드림씨아이에스 지분 인수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정보기술(IT)과 패션유통 업체인 리노스를 대리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임상시험전문수탁기관인 드림씨아이에스의 지분 인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서울경제 - 리노스, 드림씨아이에스 지분 인수 완료(2014. 3. 27.)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김혜영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GS건설 용인기술연구소의 Sale and Lease Back 거래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GS건설 용인기술연구소의 Sale and Lease Back 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GS건설 자산매각 '첫단추'...용인기술研 장부가보다 높은 613억에 팔아(2014. 4. 15.)

[담당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설일영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영화 '메이크 유어 무브' 제작 과정에서 할리우드 투자계약, 배급계약, 에이전시계약 검토 및 SM엔터테인먼트와 CJ E&M 측에 자문 제공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개봉한 영화 '메이크 유어 무브' 제작 과정에서 할리우드 투자계약, 배급계약, 에이전시계약 등을 검토하고 SM엔터테인먼트와 CJ E&M 측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 법률 논단 ■

[금융규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개정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예금자라면 무조건 환영받고 고액예금자는 은행의 VIP 고객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금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금 공급원 중 하나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 은행이 예금자를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고객확인 의무(Customer Due Diligence)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할 경우 자금세탁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벌금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는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마련되었고 특히 9·11 사태 이후에는 국제 테러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단순히 번거로운 규제들 중 하나가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JP Morgan Chase가 미국에 주재하는 해외 외교관들의 은행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 오던, 계좌 유치를 위하여 고객들을 찾아다니던 은행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은행이 관련 계좌를 유지하면서 얻는 이익에 비하여 그러한 계좌에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compliance cost), 그리고 만에 하나 관련 법령에 위반함으로써 자금세탁혐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의 액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9월 27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그 해 11월 28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부 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혐의거래보고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Currency Transaction Report)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혐의거래보고제는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혐의거래보고제는 자금세탁행위라고 의심될 만한 상황의 유무(有無)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반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는 몇몇 예외적인 거래를 제외하고는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8년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Know Your Customer)를 도입하여,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 원(외국환거래인 경우에는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이러한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좌 개설 후 고객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위에서 본 JP Morgan Chase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계좌 개설 후 상당 기간 당사자에 대한 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지가 금융회사와 고객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를 하다가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폐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 이민 등으로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내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로서는 고객에게 연락을 할 수 없어 고객의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러한 휴면계좌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폐쇄할 권한이 없다면 고객확인이 되지 않은 계좌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산하 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하고 있는 FATF-GAFI(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정하여진 고객확인절차에 따른 고객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확인의무주체는 사업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당해 고객에 대해서는 혐의거래보고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위험성이 미국 등 서구에 비하여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고객의 민원 제기 우려 등 영업적인 고려 때문에 금융회사가 고객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고객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고객확인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좌 개설 금지나 계좌 폐쇄가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FATF-GAFI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당해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혐의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고객확인 의무의 대상도 확대하여 단순히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뿐만 아니라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 소유자에 대한 사항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이 자금 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거래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내 돈을 예금하면서 금융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국제적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자금의 유입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고객 또한 금융회사들의 고객확인이 번거로운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며, 범죄 방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 법률 논단 ■

[사모펀드] PEF의 새로운 이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법무법인 지평 이형규 변호사)

지난 4월 24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산재한 사모펀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PEF(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실무적으로는 PEF라는 이름이 계속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PEF 관련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PEF의 사후보고제 도입입니다. 일반 사모펀드의 사후보고제와 달리 PEF의 사후보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고, 사후 감독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의 본질은 익명성 보장이고,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자본 공급을 본질로 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해서 도입한 서구의 PEF에 대해서는 투자자 적격성과 공모 요건 관련 이외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운용사에 대한 등록을 추가하는 정도로 규제가 추가되는 데 그쳤습니다.

2004년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도입된 한국형 PEF는 사전등록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운용방법도 법에 정한 방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PEF에 대한 경험이 일천했던 우리 금융환경에서 이러한 규제형 PEF의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서구와 달리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여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PEF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국내외 투자를 통한 일정한 성과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의 대체투자 확대에 조응해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

황이 되었습니다. 전업 PEF 운용사(GP)는 물론 금융기관인 PEF 운용사들은 이제 그 house의 평판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GP 입장에서는 여전히 fund-raising이 중요하지만 과거보다는 LP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협상력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감독당국이 사전등록제를 통해 통제하던 위법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장 자율에 맡겨 자정기능을 통해 억제되는 시도를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M&A 시장과 구조조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PEF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needs)를 창발성 있게 수용하고 그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운용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PEF의 운용상 규제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옵션부 투자와 관련된 모범규준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실무계에서는 PEF에 대한 사후등록제보다 이러한 운용상 규제에 대한 규제 체감도가 훨씬 높고 또 PEF의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PEF에 대해 가지는 콜옵션이 그것입니다.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에 최대주주의 콜옵션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허용여부와 조건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데, 최대주주의 콜옵션을 포함한 투자구조는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과 PEF의 투자수익 실현을 위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PEF가 투자함에 있어 이러한 콜옵션 허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M&A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PEF 규제완화를 통한 M&A 활성화 방안에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서도 IPO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PEF 운용사인 Black Stone은 2007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EF 운용사들이 최대주주인 투자대상기업의 상장이 증가하면, PEF 운용사 자체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거래소에 첫 상장되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기업공개에 따르는 부담도 안겠지만 PEF에 대한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한국 PEF 시장의 질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최신 판례 ■

[지적재산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1. 판단 내용

[다수의견]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반대의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특허권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 비교**가. 제도의 취지****(1)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과 특허무효를 구하는 심판절차를 별개로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

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특허무효 여부를 권리범위확인 전제로서 항상 먼저 심리하여야 한다면, 이는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요건을 심사하는 전심절차로 취급하는 것과 같이 되어 이들을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체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반대의견

반대의견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하여 잘못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처럼 특허의 외양을 하고 있을 뿐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게 되면 실제 없는 특허권에게 온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권리범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정작 그 권리는 부정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 분쟁의 실효적 해결, 심리 주체 및 당사자의 이익

(1) 반대의견

반대의견은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통한 특허발명의 보호·장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심판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체 면에서 살펴보더라도,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모두 특허심판원이 담당하므로 문제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상호 모순되는 판결을 방지할 실익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반대의견의 논리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에 과도한 심리 부담을 주게 되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인데, 모든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항상 직권으로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지 심리해야 한다면, 판단 주체에게 심리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도 크게 기대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불복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통한 분쟁을 계속할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자들로 하여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3) 반대의견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의 보충의견 역시 심판청구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심리·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면, 심리에 부담이 따른다고 하여 그 심리를 생략한 채 아무런 이익도 없는 심판청구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심리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심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다수의견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준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는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단일한 분쟁을 여러 개의 소송사건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와 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다. 특허권침해소송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

(1) 반대의견

대법원은 2012년 1월 1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0다95390)에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은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데, 위 논리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적용하면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의 의미를 갖는 권리범위의 확인을 청구할 이익도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2)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위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도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여 바로 그 특허가 무효인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거나 권리범위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견은 특허권침해와 권리범위확인 차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을 받아들여 특허권침해를 부정하는 것은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가 아닌 “권리행사의 제한사유”를 이유로 하여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결의 효력도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권리남용의 항변을 인정하더라도 특허의 대세적 효력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서만 부정할 수 있도록 한 특허법의 기본구조와 상충되지 않지만, 심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사유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특허법의 기본 구조와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라. 공지성과 진보성의 비교

(1)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까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1후56)을 언급한 후, 위와 같은 법리를 공지공용의 것이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뿐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반대의견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결론,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신규성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보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규성 결여와 진보성 결여는 모두 발명의 구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 요구되는 특허의 무효사유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발명의 신규성을 심리·판단하는 것과 진보성을 심리·판단하는 것 사이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 최신 판례 ■

[노동]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여연심 변호사 | 민창욱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이고, 원고들은 위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입니다. 피고 회사 내에는 지역별 노동조합인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 조합원입니다.

2008년 9월 15일 한 골프장 이용객이 경기 진행에 관해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피고 회사는 당시 골프경기를 보조하던 원고 甲에게 경기 진행이 지연된 책임을 지적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8년 9월 24일 원고 甲이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회사 방침에 대항했으며, 피켓시위를 하는 등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 노조는 원고 甲의 해고에 대해 항의시위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1차례 출장을 거부하고,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임원들은 2개월 이상 결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개월 이상 출장을 거부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제명처분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출장유보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출장유보처분 및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판결요지

-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 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영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시설운영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기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영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영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2)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

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 (3) 골프장 캐디인 甲 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乙주식회사로부터 제명처분 등 징계를 받은 후 乙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乙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4)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게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근기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4조 (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시사점

대상판결의 쟁점은 골프장 캐디인 원고들이 근기법 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원고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유효하게 됩니다. 원고들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근기법이 아니라 노조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종래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은 골프장 캐디가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 ① 캐디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② 캐디가 지급받는 캐디피는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고 못 볼 바 없는 점, ③ 캐디는 다른 회사에 취업이 사실상 곤란하여 특정 회사에 거의 전속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은 골프장 캐디가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① 캐디가 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닌 점, ③ 캐디피는 내장객이 임의로 정하는 것일 뿐이고 회사가 캐디피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④ 캐디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용역 제공을 마친 뒤 골프장에서 바로 이탈할 수 있는 점, ⑤ 캐디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근기법상 휴업수당을 받지 않는 점, ⑥ 캐디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⑦ 캐디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⑧ 캐디가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상판결은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996년 골프장 캐디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이 사실상 골프장 캐디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1993년 판결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다릅니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노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정의와는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제공하는'이라는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현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자만을 근로자로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각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주로 국가에 의해 설정되고 감독되는 근로조건 등의 최저한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개념인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향유하는 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개념입니다(대상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6쪽 참조). 근로자 개념상의 차이로 인해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넓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 8568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기존 1996년 판결에서 제시한 7가지 지표(대법원 95누13432 판결 ①-⑦의 사정)를 그대로 원용해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도, 그 노무의 실질관계를 고려했을 때 골프장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기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최신 판례 ■

[도산] 파산관재인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배성진 변호사 | 배기완 변호사

1. 사실관계

A은행은 B회사에 200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정이율을 연 25%로 정함.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 한편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를 하면서 이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발생한 채권도 모두 시인함. 또한 같은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A은행을 포함한 다른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함.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A은행의 후순위파산채권 신고 내역 중 연 6%의 이율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해 부인했고, A은행은 파산채권확정 재판을 제기함.

2. 쟁점

파산관재인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3.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4. 해설

법원의 허가는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 포기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만약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위 조항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면, 이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B회사 파산관재인은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회사의 파산관재인이 ①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한 점, ② 시효소멸 주장 기간 중의 채권도 이율이 문제 되지 않으면 모두 시인한 점, ③ 위 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당을 시행한 점을 근거로 B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는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 포기의 효력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A은행의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B회사 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구 파산법 제187조 제2호 소정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

■ 최신 법령 ■

[공정거래]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구체적 유형 제시

박형삼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1.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2014. 5. 12. 시행)

가. 적용범위 (제2조 제1항)

재판매(ex. 대리점이 상품을 매입한 후 다시 판매), 위·수탁 거래(ex. 대리점이 본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을 하고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계속적 재판매거래 등) 중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

나. 금지유형

- (1) 구입 강제 금지(제4조) : 판매업자가 청약·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 (2)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제5조) :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 (3) 판매목표 강제 금지(제6조)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 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불이익 제공 금지(제7조) : 계약 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5) 부당경영간섭 금지(제8조) :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임직원·판매원의 영업지역·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6)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제9조) :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

시한 제품명,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다. 5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상 보복조치 금지 규정과 함께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다운로드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5월 9일 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5월 1일 자 보도자료」

■ 최신 법령 ■

[상법] 상법 일부개정안

정철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1. 무기명주식 폐지

무기명주식 제도는 1963년 최초 제정된 상법부터 포함되어 있던 제도로, 지난 4월 29일 국회는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폐지의 이유

상법 개정의안을 통해 알 수 있는 무기명주식 제도 폐지의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기명주식은 1963년 상법 제정 이래 한차례도 발행된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무기명주식은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무기명주식을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현재 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기명주식의 발행이나 무기명주식으로의 전환이 금지되므로(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 발행된 무기명주식은 기존 상법 규정에 따라 유효합니다), 만일 무기명주식을 발행하거나 무기명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해당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다운로드 : 「상법 일부개정법률」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

채희석 변호사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주요 세부실행과제의 하나로 지난 2014년 3월 6일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M&A 활성화 방안」의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안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4월 24일 발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고,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이미 Legal Update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개정안 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12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발행·공시규정의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개정 이유

「M&A 활성화 방안」 및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2. 주요 내용**가. 상장예정법인의 반기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증권의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첨부서류로 반기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반기보고서 제출기일(반기 종료 후 45일)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반기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이전 분기보고서로 대체됩니다.

나.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매각 시 공개매수의무 면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식의 매각 시 매수자의 공개매수의무가 면제됩니다.

3. 다운로드 :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관련 규정 입법예고(지평 Legal Update)」,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최신 법령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배성진 변호사 | 허종 변호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를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비슷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취지로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4년 4월 15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가. 보험종목의 구분 합리화(제8조 제1항)**

각각의 허가단위로서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및 원자력보험을 하나의 허가단위인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으로 통합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보험종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추가(제42조의4 제4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를 비슷하게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② 보험회사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 불공정한 대출의 유형 추가(제56조의2 제4호 및 제5호 신설)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와 차주인 중소기업 등이나 일정한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라. 보험조사협의회의 위원 임명 등 개선(제76조 제1항)

보험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험조사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권익보호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최신 법령 ■

[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정원 변호사 | 박수정 변호사

1. 개정 이유

기존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헌재가 과거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시대 상황, 국민 법 감정 변화 등의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를 제한하여, 종래의 합헌결정 이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청구를 방지하고 합헌결정에 실린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위헌 결정을 받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제47조 제3항 신설).

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파급 효과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 11월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 개정예 따라, 2002년 1월 이전에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인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종래 합헌결정 이전에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 최신 법령 ■

[행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

정원 변호사 | 박수정 변호사

1. 개정 이유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취소소송의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였으나,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뿐 아니라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제2항).

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다운로드 :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단신 ■

김지형 고문변호사, 연구논문 「노동법리의 법적 논증」 '법학평론' 제4호 게재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연구논문 「노동법리의 법적 논증」이 '법학평론' 제4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김지형 前대법관 “노동법 미래는 사회적 정의 회복에”(2014. 2. 23.)

■ 단신 ■

최승수 변호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강의 외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가 4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승수 변호사가 4월 15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승수 변호사가 4월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승수 변호사가 3월 19일 한국게임법학회에서 주최하는 '게임산업, 그 규제와 진흥의 한계' 창립 심포지엄에 개회사와 제1주제 '한국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토론의 좌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최승수 변호사는 현재 한국게임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디스이즈게임 - "게임 규제는 정부와 국회, 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2014. 3. 19.)

■ 단신 ■

김성수 변호사, '암관리세미나'에 참석하여 '담배소송의 현황과 전망-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특강 外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가 4월 22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암관리세미나'에 참석하여 '담배소송의 현황과 전망-미국과 한국의 사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을 비롯하여 예방의학, 보건학, 통계학, 의학을 전공한 연구자, 석·박사학위 과정 연구원 및 국제암대학원 대학의 대학원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경청과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4월 11일 SBS 라디오 방송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시작 후 53분부터 약 12분간 출연하여 '4월 10일 대법원의 담배소송 판결에 대한 의미와 문제점, 향후 영향 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관련 방송 듣기]

- SBS 라디오 방송 '한수진의 SBS전망대' - '4월 10일 대법원의 담배소송 판결에 대한 의미와 문제점, 향후 영향 등'(2014. 4. 10.)

김성수 변호사가 3월 6일 KBS TV 뉴스토크에 출연하여 '흡연 피해 관련 담배 소송의 쟁점과 의미'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관련 방송 보기]

- KBS TV 뉴스토크 - '흡연 피해 관련 담배 소송의 쟁점과 의미'(2014. 3. 6.)

■ 단신 ■

정철, 류혜정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삼성물산 해외계약관리 실무 과정' 강의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 | 류혜정 변호사
| 한승혁 호주변호사)

정철, 류혜정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가 3월 31일 삼성물산 해외계약관리 실무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승혁 호주변호사가

'세션 1, 국가별 투자 환경 비교 및 국가별 분쟁 해결 사례 등'을, 류혜정 변호사가 '세션 2, EPC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이행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정철 변호사가 '세션 3, PPP(민간투자사업) 형태의 해외 프로젝트 관련 쟁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정철, 고세훈 변호사, '미얀마 최근 법률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설명회' 발표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 | 고세훈 변호사)

정철, 고세훈 변호사가 4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미얀마 최근 법률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설명회'에 참석하여 '미얀마 최근 법률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와 '비즈니스 관점에서 살펴본 미얀마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단신 ■

류혜정 변호사, 한국기술진흥원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지평 류혜정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가 4월 16일 한국기술진흥원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자문단 자문위원
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단신 ■

주성훈 변호사, 매일경제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M&A 전략 전문가 과정' 강의 外



(법무법인 지평 주성훈 변호사)

주성훈 변호사가 매일경제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M&A 전문가 양성을 위한 'M&A 전략 전문가 과정'에서 5월 15일 '적대적 M&A와 M&A Financing'을, 4월 17일 'M&A와 법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M&A 전략 전문가 교육과정, 매경교육센터 4월부터 개강(2014. 3. 21.)

주성훈 변호사가 3월 3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사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성훈 변호사가 2월 27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제1기 M&A 과정에서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M&A 법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고세훈 변호사, '미얀마 노동법/세법 세미나' 발표



(법무법인 지평 [고세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가 4월 3일 KOTRA 양곤무역관에서 주관하는 미얀마 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미얀마 노동법/세법 세미나'에 참석하여 미얀마 진출 한국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노동법, 세법 관련 최근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단신 ■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의



(법무법인 지평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외래교수로 초빙되어 '러시아·CIS 법제'를 주제로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1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단신 ■

임승혁 공인회계사, 'M&A 세법 실무(제2판)' 발간



(법무법인 지평 임승혁 공인회계사)

임승혁 공인회계사가 4월 'M&A 세법 실무(제2판)'을 발간하였습니다.

'M&A 세법 실무(제2판)'은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증자 및 감자 등 M&A 거래 유형별로 관련 세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해설하고, M&A 실무 담당자 및 세무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신 ■

구상수 공인회계사, 중부지방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 선임



(법무법인 지평 구상수 공인회계사)

구상수 공인회계사가 2월 21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2016년 3월까지입니다.